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사육과 동물병원의 할 일

김 병 성*

1. 머리말

수의사의 진료분야를 산업동물진료와 애완동물진료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산업동물은 수입개방압력,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양축가의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지며 한편, 수의학 자체도 과거의 개체진료체제에서 집단예방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수의학의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만은 개 사육에 한하여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고급종류의 고양이, 새, 어류, 말, 야생동물의 사육도 증가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기술의 향상 등 기술적인 면 보다도 앞으로 증가되는 애완동물의 사육이나 일반국민에게 수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선 애완동물만이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애완동물 사육현황

우리나라는 아직 애완동물의 국가나, 시도, 민간 또는 상용이나 전문통계가 미진합니다. 애완동물 판매점에 관한 통계 또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점 통계도 동물검역이나 국내 가축방역상 언젠가는 등록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개에 관한 기초통계가 농림수산부의 국가통계로 발표된 것이 있으며, 이 통계에 잡힌 개의 사육현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3. 수의사의 할 일

(1) 개업수의사나 시·도·구·군 등 수의사회는

공동으로 국가, 시도, 구청, 동사무소, 동물보호단체 등이 실시하는 동물보호운동, 개 사육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주민, 사회전체에 실시하는 애완동물 홍보사업에 적극 참여.

(2) 사육 목적은 첫째로 국민정서교육, 애완동물은 인간의 동반자라는 사회정신함양 등에 있는 사실을 적극 홍보.

(3) 개나 기타 애완동물 사육자, 주민에 대하여 사육하는 개의 품종, 선택요령, 길들이기, 간단한 자가훈련 요령, 사양관리 방법과 관리 장비의 선택 방법 등의 지도에 참여.

(4) 개 사료의 사용방법, 사료 영양에 관한 상식, 내외기생충병 관리,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사양관리나 예방주사 실시 프로그램 홍보의 공동대처.

(5)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 수의사회, 분회 또는 인근 수의사가 주동이 되어 해결.

(6) 위의 일을 위하여 지역 관내 수의사가 단합하여야 하며, 대응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작성 시행.

4.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진료업무의 특수성

(1) 개 사육주가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사양관리 요령, 개의 종류나 개체에 따라 특성이나 습관이 다른점, 동물병원에서의 수의학적 처치방법 등을 측면에서 홍보 노력하고, 사육주의 간단한 개 훈련방법, 간호요령, 개의 사육목적에 맞는 품종선택 상식의 지도가 요망됨.

(2)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 자문역할 실시.

(3) 진료 후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프로그램, 사양관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육주에 실시.

* 전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우리나라의 개 사육현황(1992년 12월 말현재)

지역별	시·도별	사 육		사 육		비 고
		호 수	비율	두 수	비율	
전국총계	전국	1,067,698호	100%	2,305,712두	100%	농림수산부통계에서 요약
수도권지역	서울	137,346호		165,796두		
	인천	21,246호		31,108두		
	경기	127,687호		314,087두		
	(소계)	286,279호	26.8	510,991	22.2	
직할시지역	부산	33,846호		46,827두		
	대구	14,460호		21,039두		
	광주	25,104호		39,068두		
	대전	16,095호		28,006		
	(소계)	89,505호	8.4	134,940	5.8	
기타지방지역	강원도등 8개도	691,914호	64.8	1,659,781두	72.0	

(4)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막론하고 개나 기타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시킬 수 없는 성격이며 어느나라도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임. 다만 인근 주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 사육자, 옆주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의 양보와 이해사항으로 개별협의 차원의 문제이며 사회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법차원으로 이러한 의견대립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적합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5) 동물병원 수의사나 정부단체가 협동하여 장소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6)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과 관련이 되는 권장법 조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음(관계법 발췌문 참조).

5. 일본 소동물병원 등의 활동사례 소개

— 소동물병원은 애완동물을 인간의 동반자 자격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육자와 인근거주자, 아파트관리사무소, 양로원, 학생모임, 구청행사의 동물보호 활동사업에 참여하여 애완동물의 성격, 사육요령, 국민의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개, 토끼, 물뿔트, 새 등을 가지고 여러기관을 방문하여 애완동물과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기록보존하고 지역수의사 모임에서 공동토론회하며 걸프 식육 오염시 동물보호요원 파견, 국내지진, 재해지역의 동물보호, 대설후의 동

물의 먹이 주기운동, 정부의 배회견의 보호관리 사업에 협조하고 있음. 또한 작년에 개정된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무사항으로 진료동물에 대하여 안전한 사양과 위생관리 방법, 동물보호와 기타 요령 등을 반드시 소유자에 지도계몽하도록 법에 명문화한 바 있음. 이와같은 운동은 지역별 구분회 별로 그 지역의 수의사가 단합하여 자기지역을 공동실시하고 있음.

— 국가에서는 18년 전부터 국무총리 담당으로 동물보호법을 정하였고 그 법에는 매년 9월 20일~26일까지를 국무총리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동물애호주간을 설정하여 국가나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이에 걸맞는 행사를 치루도록 모범에 규정하여, 동물을 통한 국민정서 교육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음. 또 광견병 예방법을 제정하고, 개 사육자는 반드시 동회에 등록하여 등록 감찰을 받고, 전두수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치고, 등록표와 주사필 표를 개에 부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동물 판매업도 계층제로 되어있음.

—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시도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전국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東京都 번두리의 대표적인 하나의 센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직원은 수의사가 소장이 되어 동물보호기능직, 사무직을 거느리고 있음. 그 시설은 고양이나 개의 축사, 동물과 만남의 광장, 회의실, 해부실, 시험 검사실, X-선실, 어린 개의 견사, 격리 관찰용 견

사(독방), 탄산가스 처분장치, 소각로 등이 있으며, 부지면적 650평에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찰 도지사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업무내용)

(1) 동물애호에 관계되는 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 (2) 개에 의한 위해방지 대책사업
- (3) 야견의 수용, 개로 인한 고충처리 상담.
- (4) 동물의 사육지도와 조언
- (5) 쓸모없게된 개, 고양이의 인수, 수용, 처분
- (6) 지정동물의 사육허가와 동물판매업의 제출

사무취급

- (7) 개, 고양이 등의 검사와 처치에 관한 사항
- (8)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사업목적)

(1) 도민 사이의 동물의 올바른 사육방법을 보급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 잡힌 사회실현을 목표로 함.

(2) 버림받은 개에 가능한 기초훈련을 조금씩이나마 많은 개에 실시하여 재사육의 기회를 넓힘.

(3) 동물보호 담당직원의 인재 양성이므로 사육주의 지도나 동물훈련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양성함.

(사업의 구체적 내용)

(1) 사람과 동물의 조화운동 교실의 개최

“사육주가 스스로 자기의 애완동물은 자기가 버릇을 가리킨다”라는 기풍을 함양하기 위하여 동물훈련의 실천지도와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관한 교실을 개최함.

(2) 컴패니언 애니멀 (동반동물)활동 훈련시킨 개, 토끼, 햄스터, 물뿔트 등 소동물을

데리고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 위문

(3) 훈련견의 양성

수용된 개 중에서 적성이 있는 개를 선정하여, 직원이 기초적인 버릇을 가르쳐서, 불임수술을 한다음 복지시설이나 일반 도민에 양도함.

(4) 시도 하모니제이션 (상호조화)추진협의회 설치. 도청, 동회, 통반, 지역수의사회, 동물애호단체, 애완동물 판매업자에 의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참조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1992. 5. 30. 대통령령 제 13655호 최종개정)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①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83. 6. 10).